

[별표 2의2] <신설 2006.6.22>

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(제9조의2 관련)

구분	구 비 요 건
시설 기준	1. 강의실 면적 : 100㎡ 이상 2. 사무실 면적 : 16㎡ 이상 3. 휴게실 면적 : 10㎡ 이상
강사 기준	1. 전임강사(1인 이상) 가.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전문대학,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유통관련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나.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유통관리사 1급 또는 2급자격을 획득하고 유통관련 법인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다.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유통관련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. 시간강사(3인 이상) 가.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고등학교·전문대학·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유통관련과목을 6월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나.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부장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.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라.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유통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. 1급 또는 2급 유통관리사, 물류관리사 또는 경영지도사(유통분야에 한한다)의 자격증 소지자
연수 실적	지정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2회(1회당 20시간 이상) 이상의 유통연수강좌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